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남궁역 의원 외 41명
- 나. 의안번호: 제111호
- 다. 발의일자: 2022. 8. 26.
- 라. 회부일자: 2022. 9. 2.

2. 제 안 사 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가.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시장 등의 책무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다.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7조)
- 마.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1조)

사.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26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가. 개요

- 본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도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재 서울시의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음.

'22년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본 제정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과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적절한 조치임.

〈조례안 구성 및 주요 내용〉

장(제목)	내 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 협력 등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보호계획 수립, 보호종 지정, 보호대책, 행위제한, 허가의 취소 등
제3장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보호계획, 행위·출입제한, 철새보호구역의 보호 등
제4장 (야생동물 질병관리)	야생동물 구조·치료, 서식지 야생동물 질병관리 등
제5장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피해 실태조사 등
제6장 (시민참여)	시민에 의한 야생생물보호, 야생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 표창, 야생생물 보호 교육 및 홍보 등
제7장 (보칙)	권한의 위임

- 세부적으로 제1장 총칙은 해당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총칙에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등의 규정을 두는 등 본 조례안의 체계는 무리 없이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지정을 비롯하여 질병관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서울시가 설치한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 허가 이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과 보호를 위한 조치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임.

최근 야생 조류가 투명방음벽이나 건축물 유리창에 충돌하거나 양서류·파충류가 콘크리트 인공수로에 추락하여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국립생태원, 2018)〉

구 분	조류충돌 피해량	평균 피해량	비고
건물 유리창	765만 개체/년	건물 1동당 1.07 개체	국내 건물 전체 수 7,126,526동(2017 기준)
투명 방음벽	23만 개체/년	방음벽 km당 163.8 개체	국내 투명방음벽 전체 길이 1,421km (2017 기준)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한 법령 개정 주요 내용〉

<p>I.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5호, '21.3.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충돌 방지기능이 있는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양한 방안 강구 <p>II.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6.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실시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피해방지 조치 마련 · 피해방지 조치 이행 비용은 국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동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조성하는 신규 인공구조물의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야생동물 충돌 피해와 저감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야생동물 충돌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인지하고 본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공구조물 건축·조성 시 자연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임.